

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|
| 납부의무자 | 주소 | | | |
| | 성명 (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 | | | |
| |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 | | 전화번호 | |
| 비용부담내역 | | | | |
| 사업명칭 | | | | |
| 비용부담 대상지 | | | | |
| 기반시설 개요 | | | | |
|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산출근거 | | | | |
| 납부 방법 및 납부 장소 | | 납부 기한 | . . . | |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
